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안도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254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 (안도결의원안)	2
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 (안도결의원안)	20

I. 개요

1. 안도결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6254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안도결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6. 1. 22.
- (3) 회 부 일 : 2026. 1.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국민의 투자를 통한 첨단산업 지원 및 벤처·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제91조의26, 제91조의27, 제129조의2 및 제132조의2).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과세 특례 신설 (안도결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과세 특례 신설(안 제91조의27) -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 제외)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일 것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대상에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할 것 ③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전용저축: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 ① 납입 한도가 1명당 2억원 이하(전용저축 납입한도의 합계액) ②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에만 투자 ○ (대상자) 전용계좌 가입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배당소득) 거주자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전용저축에 가입하고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투자일로부터 5년 이내 지급받는 경우에 한함)은 9%의 세율을 적용하고, 분리과세 ○ (소득공제) 거주자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전용저축에 가입하고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특례(단, 신규발행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경우만 적용) - 단,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원)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1명당 투자금액</th><th>공제액</th></tr> </thead> <tbody> <tr> <td>3천만원 이하</td><td>투자금액의 100분의 40</td></tr> <tr> <td>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td><td>1,200만원 +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td></tr> <tr> <td>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td><td>1,60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td></tr> <tr> <td>7천만원 초과</td><td>1,800만원</td></tr> </tbody> </table>	1명당 투자금액	공제액	3천만원 이하	투자금액의 100분의 4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200만원 +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1,60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7천만원 초과	1,800만원
1명당 투자금액	공제액										
3천만원 이하	투자금액의 100분의 4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200만원 +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1,60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7천만원 초과	1,800만원										

현 행	개 정 안
	○ (추정) 투자일로부터 3년이 되기 전에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환매(일부 환매 포함)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 추정, 미납·지연 납부시 가산세(10%) 규정 ○ 시행일: 공포일 ○ 적용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설정 또는 설립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분부터 적용

* 안도결의원안 2026. 1. 22. 제출(의안번호 16254)

□ 개정안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해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30년 말까지 전용계좌에 가입하여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증권등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임.

소득공제의 경우 투자금액이 3천만원 이하는 40%, 3천만원~5천만원의 경우 20%, 5천만원~7천만원 이하는 10%로 하여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되, 연간 2,500만원의 종합한도가 적용되며, 신규발행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적용됨. 또한, 배당소득의 경우 투자일로부터 5년까지 9%의 세율이 적용되며 분리과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이러한 과세특례는 직전 3개년도 간 1회 이상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거주자에게만 적용될 예정이며, 납입한도는 1인당 최대 2억원임.

또한, 동 과세특례의 의무투자기간은 3년으로, 3년 내에 양도나 환

매(일부환매 포함)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세액이 추정됨.

□ 개정안에서 과세특례를 두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2026년부터 새롭게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의 간접투자방식 중 하나임. ‘국민성장펀드’는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123대 국정과제¹⁾로 당초 100조원을 조성하여 미래전략산업과 생태계 전반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정부는 2025년 하반기에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150조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발표²⁾하였음.

정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는 한국산업은행에 설치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자금 75조원으로 총 150조원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며, 재정은 후순위 참여 등을 통하여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으로, 2026년 예산에 정부재정 후순위 보강을 위한 한국산업은행 출자 1조원이 편성되었음.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 (정부보증채권 투자자 → 이자)	민간·국민자금 75조원 (금융회사·연기금 및 국민 → 투자이익)
[산은 출연(비용보전 목적)]	[정부재정 후순위 보강] (‘26년 1조원 예산반영)

자료: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 150조원 국민성장펀드가 함께합니다.”, 관계부처합동, 2025.9.10.

국민성장펀드는 산업과금효과가 크고 상징성이 높은 메가프로젝트

1) 46.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2) 관계부처합동,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 150조원 국민성장펀드가 함께합니다., 2025. 9. 10.

를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미래 신성장동력이 될 첨단전략산업 (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10개 산업 90개 기술) 및 첨단전략 산업의 생태계 전반, 지역 소멸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지역성장 프로젝트 등을 지원할 계획임³⁾.

- 또한, 금융위원회는 최근(2026.1.) 2026년 국민성장펀드의 구체적인 운용계획을 ① 직접투자 3조원, ② 간접투자 7조원, ③ 인프라투자 10조원, ④ 초저리대출 10조원으로 발표⁴⁾하면서, 이 중 간접투자 7조원의 경우 i) 일반정책성펀드 6조 4,000억원과 ii) 국민참여형 펀드 6,0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을 밝힘.

이에 따르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기금 300억원과 민간자금 5,700억원으로 구성된 국민성장펀드 재원 총 6,000억원에 재정투입액 1,200억원을 포함한 7,200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재정 비율 20%는 후순위 출자로 손실 발생시 손실을 우선적으로 부담하여 국민의 투자 손실 위험을 줄일 계획임.

금융위원회는 3월 중으로 재정모펀드를 선정하고, 공모펀드 및 자펀드 운용사를 2026년 2분기 중으로 선정하여 6~7월경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출시·판매할 계획임.

3) 참고자료 참조

4) “국민성장펀드 운용사 공모”, 금융위원회, 2026.1.16.

[2026년 국민성장펀드 운용계획]

방식별	직접투자	간접투자	인프라투융자	초저리대출
규모 (30조원)	3조원 첨단기금 1.5조원 +민간 1.5조원	7조원 첨단기금 1.5조원 +민간 5.5조원	10조원 첨단기금 2조원 +민간 8조원	10조원 첨단기금 10조원 (산은 역마진 감수)
재정 (총 1조원)	1,500억원	4,500억원	4,000억원	-

⇓ 간접투자방식 운용계획(안)

(단위: 억원)

구분 (펀드조성목적)	재정투입액 (후순위 or 마중물)	첨단전략 산업기금 (A)	민간자금 유치목표 (B)	조성목표 (A+B)	재정 포함 합계액
간접투자방식 전체	4,500	15,000	55,000	70,000	74,500
1 일반정책성펀드	3,300	14,700	49,300	64,000	67,300
재정투입펀드	3,300	10,600	32,900	43,500	46,800
산업전반지원	① 1,600	2,400	22,000	24,400	26,000
스케일업전용	300	600	4,100	4,700	5,000
개별산업지원	② 400	1,100	3,500	4,600	5,000
지방지원	200	500	1,300	1,800	2,000
초장기 기술투자	③ 800	6,000	2,000	8,000	8,800
부처사업지원	-	400	3,100	3,500	3,500
프로젝트펀드	-	3,700	13,300	17,000	17,000
2 국민참여형펀드	④ 1,200	300	5,700	6,000	7,200

자료: “국민성장펀드 운용사 공모”,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1.16.

□ 한편, 재정경제부는 2026년 1월 20일 이러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국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의 과세특례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발표⁵⁾하였으며, 개정안은 이러한 일환으로

5) “국내시장 복귀계획(RIA), 국민성장펀드 등 투자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추진”, 재정경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입법취지가 긍정적 측면이 있음.

첫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최근 첨단전략산업과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도록 「한국산업은행법」이 개정되어 시행⁶⁾ 중임.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은 국가 경제 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고 경제 성장과 미래 일자리 창출 등 높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국가 간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여 첨단전략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첨단전략산업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둘째,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국민의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있어서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소수 투자자(사모) 중심의 펀드를 제외한 공모 펀드에만 세제혜택

제부 보도자료, 2026.1.20.

6) 2025년 12월 10일 시행

을 부여함으로써 첨단전략산업 육성 성과를 특정 계층이 아닌 대다수 국민과 폭넓게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국민성장펀드의 정의에 있어서 사모펀드는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공모펀드에만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공모펀드의 경우 소수 투자자 중심의 사모펀드와 달리 일반 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국민성장펀드의 수익률 등을 보다 광범위한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게 할 것으로 보임.

셋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시중의 유동성을 국가 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첨단전략산업에의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경제의 선순환에 기여하고,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 등으로 유입되어 부동산과 같은 자산시장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국민성장펀드에 가입하여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같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총 소득요건이 정해져있지 않아 그 지원혜택이 일부 고소득자에게 집중되는 등 소득계층 간 과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개정안은 국민성장펀드에 가입하여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특히 개정안은 투자금액에 따라 40%, 20%, 10%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득공제 혜택은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자(2023년 기준 33%)나 한계세율이 낮은 저소득자는 소득공제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세부담에 변화가 거의 없는 반면 고소득자의 경우 소득공제의 확대에 따른 수혜를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받게 되어 소득세의 소득재분배기능이 약화될 수 있음.

일례로, 총급여가 5천만원인 자와 총급여가 1억원인 자가 총 급여액의 10%를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한다고 가정할 경우, 투자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은 총급여가 5천만원인 자의 경우 30만원인 반면, 총급여가 1억원인 자의 경우 96만원으로 보다 세액감면 혜택이 큰 것으로 나타남⁷⁾.

[총급여액에 따른 소득공제 감면세액 비교]

(단위: 만원)

총급여액	평균 소득공제	과세표준	세액(A)	투자시 추가 소득공제	투자시 세액(B)	감면세액 (A-B)
5천만원	1,050	3,950	466.5	200	436.5	30
1억원	1,670	8,330	1,423.2	400	1,327.2	96

주1: 평균소득공제 금액은 국세통계포털에 따른 총급여구간별 인당 평균소득공제액임

주2: 총급여액의 10%를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한다고 가정

주3: 과세표준구간별 세율은 5천만원 이하의 경우 15%(누진공제액 126만원), 8,800만원 이하의 경우 24%(누진공제액 576만원임)

7) 참고로, 같은 조건하에서 총급여가 5천만원인 자와 총급여가 1억원인 자가 동일하게 500만원을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한다고 가정한다면, 감면되는 세액은 총급여가 5천만원인 자의 경우 30만원인 반면, 총급여가 1억원인 자의 경우 48만원으로 나타남.

이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는 소득계층 간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가입 직전 3개연도 중 1회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가입자는 세제 혜택에서 제외하였으며, 연간 소득공제 종합한도인 연간 2,500만원도 적용된다는 입장이나,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한정된 것으로, 여전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고소득자들에게 혜택이 상대적으로 크게 귀속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연간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원)가 적용되는 인원은 2024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준 999명으로 전체의 0.008%에 불과하여, 연간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적용하더라도 극히 일부만 제외될 뿐 대다수의 고소득층은 소득공제 확대에 따른 수혜를 받게된다는 사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2024년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 인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전체 신고 인원(a)	11,932,469	21,078,535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 인원(b)	999	859
비율(b/a)	0.008	0.004

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중복 인원 존재
자료: 재정경제부

특히, 특정 펀드에 대하여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준 사례는 ‘소득공제장기펀드(2014~2015년)’ 및 ‘청년형 소득공제장기펀드(2021년~2025년)’가 있는데, 두 펀드 모두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만이 가입대상이며, 가입 이후에도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금액 6천7백만원을 초과하는 과세연도는 세제혜택이 미적용되는 등 소득요건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였던 펀드 사례]

펀드명	소득공제 장기펀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근거조문	조특법 제91조의16	조특법 제91조의20
가입대상	총급여 5천만원 이하	총급여 5천만원 (종합소득 3.8천만원) 이하 청년(19~34세)
가입기한	'14.1.1. ~ '15.12.31.	'22.1.1. ~ '25.12.31.
계약기간	10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하
납입한도	연 600만원	연 600만원
세제혜택	가입일로부터 10년간 납입금의 40% 소득공제 (총급여액 8천만원 초과하는 과세연도는 미적용)	계약기간동안 과세기간에 납입금의 40% 소득공제 (총급여액 8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7백만원 초과하는 과세연도는 미적용)
추징	5년 미만의 기간 내 해지 시 납입금 누계액의 6%를 추징 * 감면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시 실제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	3년 미만의 기간 내 해지 시 납입금 누계액의 6% 추징 * 감면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시 실제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

자료: 재정경제부

특히, 재정경제부는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타 개정안⁸⁾에 대하여 투자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 감세 혜택이 귀착될 우려가 있으므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개정안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임.

8) 조세특례제한법(이언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5701호)

둘째, 납입한도가 인당 2억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점 및 의무투자기간이 3년이라는 점 역시 소득계층 간 과세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2025년 12월 기준 ISA에 가입한 1계좌당 평균 투자금액은 632만원이고, 누적 투자금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좌의 수는 약 5만계좌로 전체의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ISA 가입자 및 투자현황]

(2025. 12월말 기준)

구 분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합 계
가입계좌(만좌, A)	92.0	13.9	659.2	765.2
전체 투자금액(억원, B)	152,666	13,087	317,938	483,691
1계좌당 투자금액(만원, B/A)	1,659	944	482	632

자료: 금융투자협회

[투자금액 수준별 인원]

(2025. 12월말 기준)

구 분	계좌수(천좌)	비중
1만원 이하	4,221	55.2%
1만원 ~ 10만원	337	4.4%
10만원 ~ 3백만원	974	12.7%
3백만원 ~ 5백만원	237	3.1%
5백만원 ~ 1천만원	382	5.0%
1천만원 ~ 2천만원	818	10.7%
2천만원 ~ 4천만원	421	5.5%
4천만원 ~ 6천만원	146	1.9%
6천만원 ~ 8천만원	64	0.8%
8천만원 초과	51	0.7%
합계	7,652	100.0%

자료: 금융투자협회

이러한 ISA 평균 투자금액을 고려할 때, 납입한도 인당 2억원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높은 가입한도에 따른 세제혜택이 자금 여력이 있는 일부 고소득자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음.

또한, 개정안은 동 펀드 가입 이후 3년 전에 양도나 환매·일부환매를 하는 경우 감면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무투자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경우 자금여력이 충분하지 않고 장기투자의 여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저소득층의 경우 가입 유인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음.

셋째, 개정안은 가입자의 소득 요건이나 나이 요건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펀드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위하여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 미취업 자녀 등의 명의로 자산을 분산예치하는 등 과세특례를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 경우 개정안에서 1인당 2억원의 납입한도를 제한한 규정을 우회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존 자산이나 소득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참고로, 현재 ISA 가입대상의 경우 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로 나이 요건의 제한이 설정되어 있는 반면, 과거 뉴딜 인프라펀드(가입한도 인당 2억원), 공모인프라펀드(가입한도 인당 1억원), 공모부동산펀드(가입한도 인당 5천만원)의 경우 나이 요건을 제한하지 않은 사례도 존재함.

하지만, 나이 요건 제한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가 아닌 미성년자 등에게 증여 유인으로 작용하여 근로 없는 재산의 세대간 이전을 촉진할 우려가 있음.

넷째, 국민성장펀드라는 특정 펀드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것이 투자상품 간 과세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정부는 특정 펀드에의 과세특례 부여 여부는 정책목적 등을 감안하여 선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특정 펀드에 과세특례를 부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정책목적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타 정책펀드 등에 우선하여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만 과세특례를 부여할 정책적 우선성이나 필요성 등이 명확히 소명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의 증권등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과세혜택이 부여되어 가입자가 예금이나 적금, 타 분야 증권등이나 기타 투자상품에 투자할 유인이 떨어지게 되므로 투자상품간 과세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비효율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개정안은 세제혜택이 되는 국민성장펀드의 요건을 구체화하지 않은 채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

임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며, 세제지원 대상의 구체성이 부족하여 세제지원의 목표가 국민성장펀드의 조성액 제고에만 한정되는 문제가 있음.

특정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의 목표는 당해 펀드가 투자하는 대상에의 투자 활성화로 인한 정책적 필요성 및 공익 목적을 위해 설정되어 있어야 하나, 투자 대상, 주목적 투자 비율 등이 구체화되지 않은 채 단순 펀드 조성액 제고라는 정책목표를 위해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동시에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개정안은 ‘국민성장펀드’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 정의하고 있으며, 투자 대상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대상’으로 규정하여 그 요건 및 투자대상을 구체화하지 않은 채 일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해당 규정만으로는 세제지원 요건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또한 이처럼 세제지원의 대상 및 요건 등이 불명확하여 개정안만으로는 세제지원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한계가 존재함.

따라서 개정안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투자 대상, 주목적 투자비율 등 구체적인 투자 계획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근거로 세제지원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개정안 중 ‘기업성장펀드에 대한 과세특례’의 경우에는 그 지원 대상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여섯째,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은 5년 이상이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투자일로부터 5년까지만 적용되어, 펀드의 청산일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국민성장펀드는 정책펀드의 특성상 펀드 초기 혹은 중간 과정에서의 배당보다는 펀드가 청산한 후에야 비로소 수익이 발생될 확률이 높음. 개정안 및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만기는 최소 5년 이상의 장기로 설정될 예정이므로, 동 펀드의 수익은 청산 이후인 최소 5년 이후에 실현될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개정안은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투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로 한정하여 사실상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배당소득이 크지 않을 수 있어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목적 및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일곱째, 과거 국민참여형 정책펀드의 수익률 등을 고려할 때,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더라도 그 효과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 재정으로

사실상 원금을 보장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과거 2021년에 추진한 국민참여 뉴딜펀드⁹⁾와 유사하게 일반 국민이 정책펀드에 출자하고 재정이 후순위로 출자하는 구조임.

그러나 과거 국민참여 뉴딜펀드의 연간 수익률을 살펴보면, 후순위 출자한 재정이 손실을 우선적으로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개의 자펀드 중 7개의 수익률이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2개 자펀드의 경우 음(-)의 수익률이 나타난 바 있음.

[국민참여 뉴딜펀드(청산 기준) 연간 수익률(IRR)]

(단위: 억원, %)

자펀드명	약정 총액	일반국민 실수익률 ^{주1)} (공모펀드)	자펀드 수익률 (뉴딜펀드)	재정 기준 수익률
디에스 N-01 일반 사모투자신탁	200	0.00	-1.35	-4.37
밸류시스템 뉴딜 일반 사모투자신탁	200	-1.02	-6.95	-25.22
신한 뉴딜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200	4.78	4.11	2.68
안다 뉴딜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200	7.79	10.48	13.39
오라이언 뉴딜 디딤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201	1.14	0.89	0.38
지브이에이 뉴딜성장 알파 일반 사모투자신탁	200	0.00	-1.84	-6.07
타임폴리오 혁신성장 그린뉴딜 일반 사모투자신탁	207	-6.18	-12.62	-29.12
타임폴리오 혁신성장 디지털뉴딜 일반 사모투자신탁	207	5.23	5.65	6.19
파인밸류 성장뉴딜 POST IPO 4호 일반 사모투자신탁	200	5.22	5.65	6.14
포커스 뉴딜 플러스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203	4.61	3.62	1.60

자료: 금융위원회

주1) 실제 분배는 10개 자펀드의 손익을 합산하여 이루어짐[일반국민수익률 연간 2.37%]

9) 일반국민은 민간 공모펀드에 투자하고, 민간공모 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사모펀드) 조성에 투자하는 구조임

이처럼 과거 유사한 정책펀드의 수익률이 낮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펀드에 세제혜택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낮은 수익률 및 손실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투자 매력 자체가 감소하여 세제혜택의 효과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7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이상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
(정부보증채권 투자자 → 이자)

+

민간·국민자금 75조원
(금융회사·연기금 및 국민 → 투자이익)

[산은 출연(비용보전 목적)]

[정부재정 후순위 보장]

(‘26년 1조원 예산반영)

산업경쟁력강화장관회의

정책금융협의회(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기금운용심의회(개별건 심의)

집중
지원

메가프로젝트 / 밸류체인 / 지역

투자 중심의 다양한 지원방식

지분
투자

인프라
투융자

간접
투자

국민
참여

산업 파급효과가 큰 범부처 “메가 프로젝트” 중심으로 지원

(대규모 자금 + 규제·재정·세제·지자체·인력 토탈솔루션)

* 예) GPU 10만장 이상의 AI데이터센터 및 관련 전력망 구축
글로벌 탑티어 바이오시밀러(신약 위탁생산) 종합제약사 육성

① 미래 20년 新성장동력이 될 “첨단전략산업” Target

- 첨단전략산업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10개 산업 90개 기술

*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 인공지능, 방산, 로봇 +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시행령 - 예: 콘텐츠·핵심광물 등)

② 첨단전략산업의 “밸류체인”을 구성하는 생태계 전반 포괄

- R&D, 중소·중견 및 장비·설비기업, 에너지 등 인프라, 해외진출 및 구매자 금융 등 첨단전략산업 전·후방을 포괄 지원

③ 지역 소멸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지역성장 프로젝트”

- 5극3특 전략 등을 고려한 지역특화 성장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고, 지역 우대 정책과도 연계

* 예) 경남 방산 프로젝트, 호남 AI데이터센터, 경북 이차전지 프로젝트 등

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한 과세특례(안 제91조의26 신설) ○ 적용대상: 거주자가 아래 요건을 갖춘 BDC 전용계좌를 통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받는 배당소득 <요 건> ① 1명당 1개의 전용계좌만 가입할 것 ② 납입한도가 2억원 이하일 것 ③ 전용계좌 가입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자 제외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개요 ○ (상품구조) 만기 5년 이상 환매금지형 펀드, 거래소 시장에 상장 ○ (투자대상)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성장가능성 높은 비상장기업, 코스닥 시총 2천억원 이하·코넥스 상장 기업, 벤처조합 등에 투자 ○ (투자자보호) 운용사의 시딩투자 의무, 분기별 공정가치 평가, 성장가능성 등에 대한 사전평가 등 규정 기존 공모펀드 규제 대비 벤처투자 특성을 감안한 별도 운용규제(대출 허용, 안전자산 10% 보유 등) 적용 ○ 내용: 9% 세율로 분리과세 ○ 적용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 개정안은 펀드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 등에 분산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 BDC)¹⁰⁾로부터 투자자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금액 2억원까지 9%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려는 것임.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중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주투자대상기업에 금전의 대여, 증권의 매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우리나라 현행 주요 모험자본 투자기구의 경우 ① 정책금융 및 벤처캐피탈은 모태펀드 등의 재정지원을 받거나 창업초기기업 위주로 소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고, ② 공모펀드는 환금성이 떨어지는 비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에 소극적이며, ③ 사모펀드의 경우 높은 최소투자금액¹¹⁾에 따른 제한이 있거나(일반사모펀드) 일반투자자의 참여가 금지되는(기관전용사모펀드) 등 각각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음.

이에 국회는 2025년 9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개정을 통해 일반투자자가 벤처, 비상장기업 등에 보다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26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거래소 상장을 통해 투자금 회수가 용이하도록 하고, 금전차입과 대출을 허용하는 등 기존의 공모펀드에 비해 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운용사의 시딩투자 의무, 분기별 공정가치 평가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두도록 하는 등 기존 투자기구와는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음.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자(이하 이 장에서 “적격투자자”라 한다)에 한정하여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2.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과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② 법 제249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49조의2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3억원

2. 제1호 외의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5억원

[참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와 기존 투자기구 비교]

구 분	기업성장펀드(안)	벤처투자조합	사모펀드	공모펀드
운용목적	벤처·혁신기업 투자, 중소기업 스케일업	주로 창업초기기업에 모험자본 공급	제한없음	제한없음
진입규제	집합투자업 인가	등록	등록 (일반사모, 기관전용사모 업무집행사원)	집합투자업 인가
운용주체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탈 등	벤처캐피탈	자산운용사, 업무집행사원	자산운용사
운용대상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 (자산의 60% 이상 투자)	중소·벤처기업	제한없음	펀드 종류별로 상이 (증권/부동산/혼합)
펀드설정				
	환매	폐쇄형	폐쇄형	개방형·폐쇄형
	상장	거래소 상장	비상장	통상 비상장
	규모	30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규모제한 없음 ※ 단 50억원 미만 소규모 펀드는 일부 규제
존속기간	5년 이상	5년 이상	제한없음	제한없음 ※ 단, 폐쇄형은 존속기간 설정
회수방법	거래소 시장매매	만기상환/양도	환매/지분양도	환매
투자자 보호장치	의무출자 (비율) 모집가액별 1~5% 투자 (기간) 펀드 만기별 5~10년	의무출자 : 업무집행조합원 출자지분 1% 이상 (공모벤처조합 5% 이상)	없음	의무출자 : 고유재산 2억원, 3년 이상 투자
	안전자산 보유 : 10% 이상	없음	없음	없음
	공시 투자내역 변동 등	없음	없음	공시 부실자산 명세·상각률 등

*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안(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44호) 기준

□ 개정안은 동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이하 “기업성장펀드”라 함)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2026. 1. 9.)에 포함된 생산적 금융 활성화 정책 방향을 반영한 세제조치로, 아래와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세후 투자 수익률을 제고함으로써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개인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벤처투자 성과의 공유 및 재투자를 촉진하여 선순환적인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려는 취지가 있음.

현재 배당소득은 14%(지방세 포함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45%(지방세 포함 49.5%)의 한계세율¹²⁾을 적용받게 되는데, 개정안의 저율(9%) 분리과세 조치는 투자자들의 세후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음.

둘째, 투자 수익률의 제고는 시중의 유동성을 모험자본의 공급 등 생산적 투자처로 유도하여 우리나라 벤처·혁신기업 등의 자본조달 비용을 감소시키고 이들 기업의 투자확대를 통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음.

12) 「소득세법」 제55조(세율) ① (생략)

종합소득 과세표준	한계세율
~1,400만원	6%
1,400만원~ 5,000만원	15%
5,000만원~ 8,800만원	24%
8,800만원~ 1.5억원	35%
1.5억원~3억원	38%
3억원~5억원	40%
5억원~10억원	42%
10억원~	45%

우리나라의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기업의 성장 단계에 부합하는 충분한 모험자본의 공급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 다만, 아래와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의 2028년까지의 한시적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은 벤처투자의 특성(배당 여력, 회수기간 등) 고려 시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일반투자자들이 선택 가능한 ISA 등 다른 투자상품에 비하여도 투자 유인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제한적인 적용기한) 2028년까지로 한정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은 벤처투자의 회수기간 고려 시 그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 있음.

동 펀드의 주 투자대상은 비상장기업, 코스닥 시총 2천억원 이하·코넥스 상장기업, 벤처조합 등으로, 이들은 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설비 확충 등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기업들로 일반적으로 초기 배당 여력이 없고¹³⁾, 기업공개(IPO) 혹은 M&A, 제3자 매각 등을 통한 자본차익 실현은 단기간 내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임.

최근 5년 평균 IPO 소요기간은 14.9년, 2024년 신규 상장기업의 IPO 소요기간은 16년으로 나타나고, 과거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

13) 배당의 생애주기 이론에 따르면, 기업이 신생단계에 있을 때보다 성숙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내부적으로 투자활동에 필요한 자금보다 더 많은 잉여현금흐름이 발생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업력과 배당성향은 정의 관계가 있음.

하였던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벤처펀드의 평균 투자금 회수기간¹⁴⁾은 적게는 6.1년에서 많게는 7.8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IPO 소요기간]

(단위 : 개, 년)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기업수	기간	기업수	기간	기업수	기간	기업수	기간	기업수	기간
전체	63	15.4	74	14.3	66	13.5	77	15.5	70	16.0
VC피투자	46	14.7	57	14.4	50	12.6	50	15.2	57	14.4
VC미투자	17	17.1	17	13.9	27	16.4	27	16.1	13	23.2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12년 ~ '21년 청산 벤처펀드 현황]

(단위 : 개, 억원, 배, 년, %)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청산펀드 수 (운용사 수)	42 (29)	27 (23)	34 (26)	26 (19)	43 (31)	51 (36)	57 (36)	54 (39)	48 (38)	50 (38)
출자금액(A)	6,692	3,417	7,975	5,342	7,710	11,102	11,156	9,749	9,952	11,956
분배금액(B)	7,886	5,211	10,104	7,281	8,186	14,284	16,235	13,509	14,448	20,382
수익배수(B/A)	1.2	1.5	1.3	1.4	1.1	1.3	1.5	1.4	1.5	1.7
평균 회수기간	6.1	6.1	7.1	6.9	7.8	6.6	7.3	6.9	7.0	7.4
수익률	3.8	8.7	5.5	7.7	1.1	5.6	7.2	7.4	8.9	12.4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22.4.8.

이러한 점에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초기 기업성장펀드의 분배금은 채권 등 안전자산(10% 이상 보유의무)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수익 등에 주로 국한되어 많지 않고, 개정안의 한시적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은 그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14) 스타트업에 투자한 자금을 IPO, M&A, 3자 매각 등의 방법으로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다른 투자상품과 비교) 개정안의 세제혜택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 이하 “ISA”)나 국민성장펀드 등에 비하여 세제혜택이 크지 않아 투자유인이 떨어질 수 있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자는 ISA를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200만원(저소득¹⁵⁾·농어민 400만원)까지 비과세(초과분은 9%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2025년 12월 기준 ISA에 가입한 1계좌 당 평균 투자금액은 632만원으로, 납입한도 1억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반투자자가 상대적으로 투자 위험도가 높고 세제 혜택은 적은 기업성장펀드에 투자 결정을 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임.

또한, 국민성장펀드의 경우 9% 저율 분리과세 혜택에 더하여 최대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ISA, 국민성장펀드, BDC펀드 세제혜택 비교]

구 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국민성장펀드(안)	BDC(안)												
과세특례	① 일정소득 이하 비과세 ② 초과분에 대하여 9% 분리과세 <table border="1"> <tr> <td>소득액 대상</td><td>200만원 이하</td><td>200만원 ~ 400만원</td><td>400만원 ~</td></tr> <tr> <td>저소득* 농어민</td><td colspan="2">비과세</td><td>9% 분리과세</td></tr> <tr> <td>일반</td><td>비과세</td><td colspan="2">9% 분리과세</td></tr> </table> * 총 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소득액 대상	200만원 이하	200만원 ~ 400만원	400만원 ~	저소득* 농어민	비과세		9% 분리과세	일반	비과세	9% 분리과세		① 9% 분리과세 ② 소득공제: 투자금액에 따라 10~40% 공제 (최대 1,800만원)	9% 분리과세
소득액 대상	200만원 이하	200만원 ~ 400만원	400만원 ~												
저소득* 농어민	비과세		9% 분리과세												
일반	비과세	9% 분리과세													
납입한도	1억원	2억원	2억원												
의무가입	3년	3년	없음												
적용기한	계속 적용	2030년 말	2028년 말												

15) 총 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참고: 주요 집합투자기구 과세특례 비교]

구분	투융자집합투자지구 (조특법§27)	기회발전특구 집합투자지구 (조특법 §121의35)	BDC(안)
분리과세 세율	14%	9%	9%
한도	1억원	3억원	2억원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 가입 여부	허용	허용	제한

[ISA 가입자 및 투자현황]

(2025. 12월말 기준)

구 분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합 계
가입계좌(만좌, A)	92.0	13.9	659.2	765.2
전체 투자금액(억원, B)	152,666	13,087	317,938	483,691
1계좌당 투자금액(만원, B/A)	1,659	944	482	632

자료: 금융투자협회

[투자금액 수준별 인원]

(2025. 12월말 기준)

구 분	계좌수(만좌)	비중
1만원 이하	4,221	55.2%
1만원 ~ 10만원	337	4.4%
10만원 ~ 3백만원	974	12.7%
3백만원 ~ 5백만원	237	3.1%
5백만원 ~ 1천만원	382	5.0%
1천만원 ~ 2천만원	818	10.7%
2천만원 ~ 4천만원	421	5.5%
4천만원 ~ 6천만원	146	1.9%
6천만원 ~ 8천만원	64	0.8%
8천만원 초과	51	0.7%
합계	7,652	100.0%

자료: 금융투자협회

둘째, 기업성장펀드는 정부재정을 후순위 투자하여 펀드 자산 손실 중 일정부분을 정부가 우선 부담하는 국민성장펀드와 달리, 자본시장에 상장하여 펀드 투자 리스크를 일반투자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이에 대한 세제혜택은 일반투자자들의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 리스크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기업성장펀드는 운용주체의 책임 있는 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무 보유(시딩투자)¹⁶⁾, 자산에 대한 분기별 공정가치 평가¹⁷⁾, 투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주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사전 평가¹⁸⁾ 등 일정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벤처투자는 특성상 높은 수익률과 동시에 손실의 위험이 큰 투자에 해당함.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의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②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는 자기가 설정·설립한 각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총수(추가설정 또는 신규발행된 증권 수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1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집합투자증권을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 공고 제2025-844호)

제241조의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⑦ 법 제22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다만,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모집가액이 6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한하여 100분의 1을 말한다.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의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③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1회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 공고 제2025-844호)

제241조의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⑩ 법 제229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이란 제260조제2항에 따른 가격을 말한다. 다만, 제2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도 불구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에 대한 평가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분기에 한 번 이상 해야 한다.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⑤ (생략)

6. 성장가능성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 공고 제2025-844호)

제81조의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의 제한 및 예외 등) ⑨ 법 제81조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부평가 결과를 기초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투자심의위원회가 성장가능성, 투자자 보호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987년 벤처투자조합 제도화 이후 2024년 6월까지 청산된 벤처펀드(1,107개)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전수 분석 결과 펀드 수 기준 66%의 펀드는 수익을 창출하였으나, 34%의 펀드는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벤처펀드 수익률 전수 분석 결과¹⁹⁾ ('87~'24)]

구 분	수익률 구간	비중 (%)	평균 수익률(%)
수 익	30% 초과	9	15.7
	20~30%	6	
	0~20%	51	
	소 계	66	
손 실	△10~0%	21	△10.8
	△20~10%	8	
	△20 초과	5	
	소 계	34	

참고로,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성장펀드의 경우 정부 재정을 후순위 투자하여 펀드 자산의 손실 중 일정 부분을 정부가 우선 부담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반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투자에 따른 손실이 전적으로 일반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구조임.

리스크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동 펀드에 대한 과세혜택 공시는 과세혜택이 없는 예·적금 및 국채 등 안전자산보다는 유인효과가 있으므로 일반투자자들의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 위험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19) 관계부처 합동, 벤처·스타트업 글로벌화를 위한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 방안, 2024.10.

문 의 처
02)6788-5161

1. 개 요

-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BDC :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도입 추진

* 미국은 '80년 도입되어 '24년 \$1,590억(235조원) 규모, 50개 BDC가 상장 거래 중

** (국정과제46) "벤처·혁신기업 집중 투자기구(BDC) 신설"

※ '25.8.27.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 '**26.3.17. 시행**

⇒ BDC 도입시 일반국민의 벤처투자 성과공유-재투자를 통해
'민간자본 중심의 선순환적 기업 생태계' 조성 기대

2. 상품 특징

- (상품구조) 만기 5년 이상 **환매금지형** 펀드로서 거래소 시장에 상장
- (투자대상)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성장가능성 높은 비상장기업, 코스닥^{시총2천억원↓}·코넥스기업, 벤처조합등^{구주}에 투자*
 - * 쏠림 방지를 위해 코스닥기업, 벤처조합등은 60% 비율 산정시 각각 30%까지만 인정
- 기존 공모펀드 규제 대비 벤처투자 특성을 감안한 **별도 운용 규제**(대출 허용, 안전자산 10% 보유 등) 적용
- (투자자보호) 운용사의 시딩투자 의무, 분기별 공정가치 평가, 성장가능성 등에 대한 사전평가, 추가 공시의무 등 규정
- (운용주체) 기존 공모 자산운용사, VC·신기사(인가심사 필요)

3. 향후 계획

- 「자본시장법」 시행일('26.3.17.) 전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 완료
-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운용사 인가** 등을 거쳐 **상품 출시** 지원